

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	2607
------------	------

2021. 9. 7.
도시계획관리위원회

I. 제안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1년 8월 11일 임만균 의원 발의
- 나. 회부일자 : 2021년 8월 18일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 -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(2021.9.7. 상정·의결)

II. 제안설명 요지(임만균 의원)

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는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지난 2013년 제정·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음.

반면 근거 법령인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은 시·도지사로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·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이

신설되는 등 여러 차례 크고 작은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 왔음.

이에 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추가하고,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근거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확도를 높이고 이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으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규정함(안 제3조제1호의2 신설)
- 종전의 모호한 규정이나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함(안 제2조 등)
-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(안 제5조제3항)

Ⅲ. 검토보고 요지(조정래 수석전문위원)

-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(검토보고서 붙임1) 서울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가운데,

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 지적재조사위원회(이하, 위원회, 검토보고서 붙임2·3)의 심의·의결사항을 보완하고, 위원 해촉 및 기피·회피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며, 조례 전반적으로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.

- 좀 더 살펴보면, 상위법에 기존의 기본계획·실시계획 외에 종합 계획이 신설되어 위원회 심의·의결에 종합계획의 수립·변경이 추가된 사항과('17.4.개정, '17.10.시행)¹⁾, 종전의 '사업지구'가 '지적재조사지구'로 용어 개정된 사항을('19.12. 개정, '20.6. 시행) 반영하고(검토보고서 붙임4),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,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등 법제처 기준 을 토대로 위원의 해촉·기피·회피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며 자구 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사안으로서, 정책적 쟁점사항은 없음.
- 다만, 이 조례가 제정된('13.10.)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데, 상위법령 및 관련법령, 입법 동향 등을 모니터링 하며 조례의 정확성 및 시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입법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V. 토론요지 : 없음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VII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) 정부는(국토교통부)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, 서울시는 종합계획을, 자치구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게 되며, 이와 관련된 사안은 중앙·서울시·자치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등을 받도록 되어 있음(검토보고서 붙임3).

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“시”이”를 ““시””로, ““시장””을 ““시장”이”로, “서울특별시지적재조사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”로 한다.

제3조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지적재조사사업지구”를 “지적재조사지구”로 한다.

1의2.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의2에 따른 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

제5조제1항 중 “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”을 “위원”으로, “당연직 위원”을 “위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 본인이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
2.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3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4.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

제6조제2항 중 “있다고 판단되는”을 “있는”으로, “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”를 “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또는 제2항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, “회피할 수 있다”를 “회피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직무”를 “업무”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회의)”를 “(위원회의 회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통지”를 “통보”로, “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”를 “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8조제4항 중 “작성·비치하여야”를 “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두되”를 “두며”로, “하고,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위원 중 1명

을 실행 간사로 들 수 있다”를 “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회의록”을 “회의록의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의견을 청취할”을 “그 의견을 들을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위촉위원”을 “위원”으로, “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”를 “범위에서 수당과 여비”로, “직접”을 “직접적으로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장에서 규정한 것 외”를 “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설치)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이라 한다)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라 한다) 소속으로 서울특별시지적재조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2.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</p> <p>3. ~ 4. (생략)</p> <p>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<u>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</u>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임명된 <u>당연직 위원</u>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조(설치) ----- “시”----- ----- ----- -- “시장”이----- 서 <u>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</u>----- -----.</p> <p>제3조(기능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의2. 「<u>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</u>」 제4조의2에 따른 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<u>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</u></p> <p>2. <u>지적재조사지구</u>----- -----</p> <p>3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----- ----- <u>위원</u>----- ----- ----- <u>위원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③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, 장
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
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
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이
위촉해지 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
(생략)

② 심의·의결사항과 직접적인 이
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
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
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
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
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
으며,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

③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시장은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
되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
수 있다.

1. 위원 본인이 위촉의 해제를
원하는 경우

2.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
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
우

3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경우

4.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를 위
반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
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
한 경우

제6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있는 -----
----- 위원
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
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

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
여야 한다.

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
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.
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
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
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(생략)

제8조(회의) ① (생략)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
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
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심의안건
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
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
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
러하지 아니하다.

③ (생략)

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
에는 심의안건, 발언내용 및 회
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.
비치하여야 한다.

제9조(간사 등) ① 위원회 사무를
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

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
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
참여하지 못한다.

③ ----- 각 호의 어느 하
나-----
---- 회피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----

--- 업무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위원회의 회의) ① (현행과
같음)

② -----

----- 통보-----
-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
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작성하
여 갖추어 두어야 -----
-----.

제9조(간사 등) ① -----
----- 두

되,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관(과장)으로 하고,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위원 중 1명을 실행 간사로 둘 수 있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1. (생략)
2.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·보존
3. (생략)

제10조(의견청취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전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1조(수당 등)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,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2조(운영세칙) 이 장에서 규정

며-----

---- 한다.

② 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 회의록의 -----
--
3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의견청취 등) ① -----

----- 그 의견
을 들을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수당 등) -----
위원-----
----- 범위에서 수당과 여
비-----
----. -----
---- 직접적으로 -----
-----.

제12조(운영세칙) -- 조례에서 규

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
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
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정한 사항 이외-----

-----.